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h1>보도자료</h1>	2012. 7. 17(화)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강석원 전문관 이해영 (Tel. 721-5733)
2012년 7월 17일(화) 16: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2106) *특허청 동시배포

“MP3 플레이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3조원 날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실패사례 심층분석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최근 수행한 지식재산사례 심층정책연구(“지식재산분쟁에 따른 우수기술의 사업화 실패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MP3 플레이어 원천특허가 사업화 과정에서 국내특허는 우리 기업간 분쟁으로 소멸되었고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 등록된 해외특허는 미국 특허괴물(NPE)에 인수되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MP3 플레이어¹⁾란 애플의 iPod, 스마트폰과 같이 디지털 파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오디오 플레이어로 1997년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GMID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MP3 기술 적용기기(MP3 Player, PMP, 스마트폰)의 세계 주요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등) 판매량이 최소 13억대 이상이었으며 해당 기술료를 \$2로 계산할 경우²⁾ 해당 기간 동안 약 27억 달러(한화 약 3조 1,500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³⁾

1) 참고자료 1 참조

2) 독일 Fraunhofer 연구소가 자신의 MP3 압축기술 원천특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기술료를

3) 참고자료 2 참조 (GMID :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 from Euromonitor)

- 그러나 디지털캐스트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의 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우여곡절⁴⁾ 끝에 세계최초의 MP3 플레이어인 ‘엠펜맨’이 시장에 출시되어 사업화 초기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였으나, 국내 기업들의 유사제품 출시와 특허무효 소송을 거치면서 국내특허는 권리범위가 축소된 후 결국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되었다.
- 반면 해외에 등록된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는 있으나 미국의 특허괴물 (NPE)인 Texas MP3 Technologies가 모두 매집하였으며 2007년 미국에서 국내·외 대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⁵⁾한 후 소송 취하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국내기업들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은 MP3 플레이어 사례는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관리 및 특허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지재권 생태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청구범위 설계가 미진하여 강한특허로 출원되지 못한 점, 국내 특허의 높은 무효율⁶⁾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국내 경쟁업체들이 특허침해에 대한 부담이 낮아 쉽게 시장진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 실제 당해 특허 분석결과, 국내출원 단계에서 특허 청구범위가 정교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경쟁자들의 무효주장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미국과 유럽에 등록될 때에는 청구범위가 잘 설계되어 무효주장에 강한 특허로 등록되었다고 이번 정책사례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연구에 참여한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우리 기업들의 특허권 행사가 높은 특허 무효율과 건당 평균 5천만원정도의 낮은 손해배상 수준이라는 두가지 큰 장벽

4) 참고자료 3 참조

5) 美 Texas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애플, 샌디스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제기(2007.2.16.)

6) 참고자료 4, 5 참조

앞에서 좌절하는 것을 사례분석과 변호사, 변리사, 기업인 등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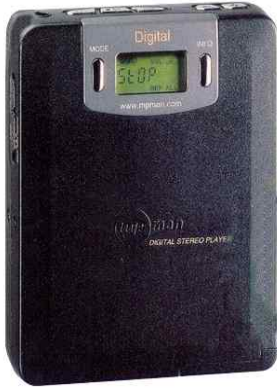
- 특허무효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수 심사인력 확충과 선행기술 조사 서비스의 양적·질적 강화**뿐만 아니라, 특허 요건의 하나인 해당기술의 ‘진보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3배 배상제도를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선결과제로서 현재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1배의 배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결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하였다.

○ 또한 연구에 참여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고영희 교수는 애플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통해 iTunes 서비스를 제공⁷⁾하고 브랜드와 디자인 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iPod를 문화 아이콘으로 승화시키는 등 특허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을 경영전략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특허에만 치중한 점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사례는 **성공적 지식재산관리는 법률, 경영, 금융의 3박자가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기업의 핵심무형자산인 특허권이 실효성있게 보호되지 못할 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보호체계 정비 등 관련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 애플이 콘텐츠 권리자들과의 협상을 타결하여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낮은 수준 (음원 다운로드 1건당 \$0.69, \$0.99, \$1.29중 하나)의 저작권료 책정에 성공, 애플은 iTunes 활용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iTunes는 처음부터 20만곡 이상의 음원을 확보하여 출발

<참고자료 1>



<엠펙맨 모델>



<초기 iPod 모델>

<참고자료 2>

<2005~2010년 세계 주요국 MP3, PMP 판매량>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멕시코, 호주 등 주요국)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판매 대수	69,590,700	90,252,400	112,891,100	107,686,100	98,216,700	89,508,200	568,145,200

자료: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 (GMID) from Euromonitor

<2005~2010년 세계 주요국 스마트폰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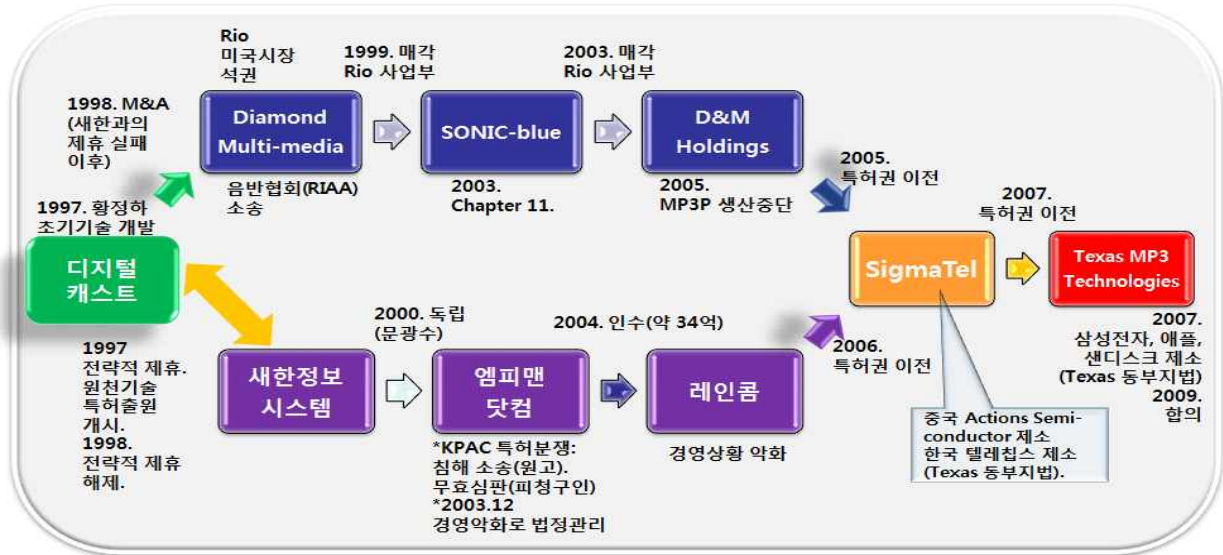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멕시코, 호주 등 주요국)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판매 대수	20,998,800	37,111,300	72,492,300	122,994,000	195,453,500	352,756,100	801,806,000

자료: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 (GMID) from Euromonitor

<참고자료 3>

MP3 원천기술 이전과정



<참고자료 4>

국내 특허 무효심판 무효율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무효율	61.1%	66.4%	69.6%	71.6%	67.4%

자료: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에 따른 특허무효율 동향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참고자료 5>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권자 승소율

	국가	특허권자의 승소율(1997~2004)
1	미국	59%(전체)/ 67%(배심원)
2	중국	33%
3	독일	33%
4	프랑스	55%
5	일본	20%
6	이탈리아	40.7%
7	영국	26% (1997~2005)
8	캐나다	35.4%
9	스위스	85%
10	오스트레일리아	31%
11	네덜란드	51% (2002~2004)
12	한국	25%

자료: David Hill, Global Enforcement & Exploitation of IP (2007)